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농업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

의안	
번호	38

제출년월일 : 2003.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제정이유

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여, 지역특화 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읍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·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함(제2조)
- 나. 자금유형은 농업종합자금, 농어촌발전기금, 벤처농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(제3조)
- 다. 이자보조는 각 자금유형별로 3회 이내로 하고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함(제4조 및 부칙)
- 라. 읍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로 함(제5조)
- 마. 이자보조 시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함(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참고자료

- 가. 농업용자금이자보조금 지급 계획 1부.

영주시농업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,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농업용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 및 사업)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·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

1. 수도작, 전작, 특용작물, 과수, 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·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·보수사업
2.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·보수사업

제3조(자금유형) 자금유형은 농업종합자금, 농어촌발전기금, 벤처농업육성자금(이하 “농업용자금”이라 한다)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.

제4조(이자지원 횟수) 농업용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이자보조는 각 자금유형별로 3회 이내로 한다.

제5조(용자금 이자보조 비율) 농업용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제6조(이자 지급방법) 농업용자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

1. 대출기관 : 매월 대출 내역을 영주시에 통보하고, 매년 말 영주시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보
2. 대출농가 :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
3. 영주시 :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대장을 정리하고, 매년 말 이자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익년 1월 15일까지 농가에 계좌입금

- 4 -

제7조(이자보조 시기)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시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8조(협약체결)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9조(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증지)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
2.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
3.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한다.

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계획

- 보조금지급기준 : 2003년도에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
- 보조자금유형 : 농업종합자금, 농어촌발전기금, 벤처농업육성자금
- 보조대상작목
 - 수도작, 전작, 과수원예, 특용작물
 - 축산분야
- 이자보조 비율 : 이자율의 50% 이내로 함
- 이자보조 시기 : 12월 말을 기준으로 익년 1월 15일까지
- 이자소요 내역 : 276,820천원(이자발생예정액 553,640천원의 50%)
- 2003년도 예산 : 240,000천원
 ※ 부족예산 : 36,820천원(추경예산에 반영)

- 연도별이자 발생액 -

연도별	농가수 (호)	융자액 (천원)	이자율 (%)	이자발생액 (천원)	비고
합계	837	15,313,439	2.5~4.0	553,640	
2003년	10	672,000	2.5~3.0	17,650	
2002년	365	7,629,750	2.5~4.0	298,530	
2001년	213	4,163,000	2.5~4.0	162,520	
2000년	211	2,339,389	2.5~4.0	59,717	
1999년 이전	38	509,300	2.5~4.0	15,223	